2014년 3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18일(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재도전성장과 노용석 과장(042-481-6840), 이종택 사무관, 허정현 주무관(4474)
기정원 기술기획부 이훈희 부장(042-388-0210), 이현준 책임(0219)

재창업 성공, R&D에서 답을 찾다!

– 재창업 전용 R&D자금 25억원 지원 –

□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상의 문제**로 **각종 기술개발지원에서 배제**되어 재기를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들의 애로가 해소**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성실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 사장방지와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재기지원**을 목표로 '13년 첫 시행되었으며,

- 많은 (예비)재창업자의 호응 속에 **108개 신청 기업 중 33개 재창업 기업을 최종선정('13.9)·지원** 중에 있다.

○ 모바일 프리워드 광고 플랫폼,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시스템, 기능성 압박스타킹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분야의 과제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과제의 경우 **높은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 '13년 지원 우수사례 】

▶ 원격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A씨는 시장상황 악화로 폐업한 이후 **신용 등의 문제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던 중,**

▶ **'재창업 R&D 사업'에 신청·최종 선정**되어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IT-BT 운동기구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음

□ 금년도에는 과제 당 **지원 한도('13 : 1억 → '14 : 1.5억)** 및 지원대상 기업의 **업력('13 : 5년 → '14 : 7년 이하)**을 확대하는 등 참여기준을 **재기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 아울러, 재기기업의 **개발 기술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효율적인 R&D 기획 지원**을 위해 **'IP-R&D 전략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연계도** 신설했다.

□ 총 **자금지원 규모는 25억원**으로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과제당 **지원금액은 최대 1.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90%이내)이다.

○ **신청자격**으로는,

-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7년이하)이며,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 **공동개발기관**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 **신청기간은 3월 19일(수)부터 4월 21(월)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받고, 선정평가(5월)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7월)할 예정이다.

○ 지원기준,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2014년도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허정현 주무관(☎ 042-481-44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116호

2014년도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은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 신제품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再起)를 지원하며, 7대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 7대전략산업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7번 항목 확인

□ **지원규모 :** 25억원

○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2.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7년 이하)**

* 단, 지원결정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는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

③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④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⑥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공동개발기관) 재창업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6119	기타미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21	욕탕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22	마사지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56193	치킨 전문점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56132	이동 음식업		96991	예식장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총사업비 구성 비율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부담)	자유응모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3월 19일(수) ~ 4월 21일(월)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4월 21일(월)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Ⅰ	[별지 제1-①] Part Ⅱ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Ⅱ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 장비)			공 통
⑤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계획서(3천만원이상장비)			공 통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⑩	관련서류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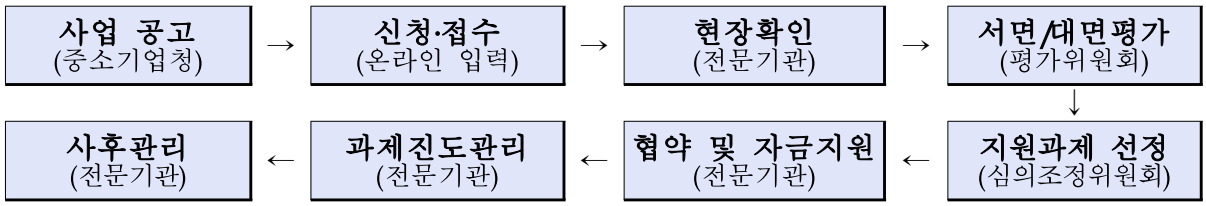
확인사항	필요서류	발급기관	제출방법	비고	
				법인	개인사업자
1. 폐업여부	①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홈텍스)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①,②중 택일	
	② 폐업신고서	세무서 양식			
	③ 매출액증명원	세무서(홈텍스)		필수	
2. 세금체납여부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 동사무소 (민원 24 사이트)		해당시 ①,②중 택일	
	② 세금 분납계획서	세무서양식			
3. 재창업 7년이하	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		필수	
	② 개인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텍스)			필수
4. 신청자격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법원		①,②,③중 택일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법원			

*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대면평가 (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

□ 지원과제 선정 (6월)

○ 우선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6.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6)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7. 7대전략산업 현황

□ 전략산업별 주요업종

전략산업	주요업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태양광, LED, IT융합, 로봇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사출금형, 특수주조, 전자부품
지역전략·연고산업	(대구) 메카트로닉스, 안경
지식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화콘텐츠산업	애니메이션, 캐릭터
바이오산업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농공상 융합 및 프랜차이즈	농산물가공, 외식프랜차이즈

□ 전략산업 구분(요약)

산 업	주 요 분 야
녹 색 신성장 동 력	○ 신재생 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폐자원에너지 등) 및 LED 응용분야 ○ 고도 물처리기술 및 그린수송시스템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RFID/USN,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및 신소재・나노융합분야 ○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및 고부가 식품산업 등
뿌리 및 부품 소재	○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및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사형주조, 특수주조 등 ○ 단조, 압출・인발 및 용접, 용접접합재료・시스템 ○ 표면처리(건식코팅, 도금 등) 및 열처리(질화, 침탄, 템퍼링) ○ 전기장비 및 컴퓨터・사무용 기기, 전기변환장치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지역 전략 및 연고	○ (부산) 기계부품소재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안경산업 등 ○ (대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산업, 실버벤처산업 등 ○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금형산업 등

	○ (울산)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등 ○ (강원) 바이오 및 의료기기산업, 신소재・플라즈마산업, 기능성식품 등 ○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 및 차세대전지산업, 태양광산업 등 ○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등 ○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등 ○ (전남)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도자기산업 등 ○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생물・한방산업, 섬유기계산업, 신재생에지 등 ○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산업 등 ○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식 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등
문화 콘텐츠	○ 출판(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 ○ 음악・공연(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연극・무용 및 음악단체, 공연 기획업 등) ○ 게임(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일반/애니메이션/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 방송・광고(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프로그램 공급업, 광고 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 캐릭터(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바이오	○ 의약용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등 ○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등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 융복합산업(농공상 융합 등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프랜차이즈 기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가맹본부)에 해당)

8.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을 위해 산정한 사업비는 불인정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사업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